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0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임이자・박성훈・조지연

송언석 · 김용태 · 유용원

김미애 • 고동진 • 최은석
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(일명 "로드킬")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,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.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, 생태통로 설치·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작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생태통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중 535개(95%)가 개선·보완 요청을 받는 등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.

이에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

현황과 생태통로 설치·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,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·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, 유지·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·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5조의 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를 각각 제45조의4부터 제45조의7로 하고, 제4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3(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·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 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생태통로 설치 관리자
- 2. 생태통로 설치위치, 규모, 형태 등 설치 재원
- 3.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 결과
- 4.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
- 5.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
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·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5조의3(생태통로 통합관리정
	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환
	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
	인 유지·관리 등을 위하여 생
	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(이
	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
	<u>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</u>
	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는
	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
	어야 한다.
	1. 생태통로 설치·관리자
	2. 생태통로 설치위치, 규모, 형
	<u>태 등 설치 재원</u>
	3.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
	통로 조사 결과
	4.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
	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
	5.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
	해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정보
	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
	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
	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	④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
	구축·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

설치 ·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 를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 시스템의 구축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3 ~ 제45조의6 (생 략) 제45조의4 ~ 제45조의7 (현행 제 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와 같음)